접수번호	이의신청 2017-20	결정일	2018.2.26.
제 목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60%에서 100%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주금납임금보관증명서로서 신주식 발행 납입금 전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외 주식 양도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지0748, 2017.11.23. 참조) 신청인들이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이유	아래 참조		

1. 처분요지

신청인은 1991.3.6. 설립되어 ○○○○ ○○○ ○○○○○○ 00(○○○)에 본점을 두고 ○○ ○ ○○○○ ○○○○○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이다.

처분청은 2017.9.7. ○○○○ ○○○○(○○○○)으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00주 중 00,000주(6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타 주주들로부터 00,000(40%)주를 취득하여 40% 증가(60%→100%)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주식변동일인 2013.12.20.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0,000,00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7.9.11. 부과·고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신청인 주장

이 건 법인은 1991.3.11. 자본금 0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3.20. 0억0천만원, 1992.12.22. 0억원, 1996.1.23. 0억원, 1999.7.20. 0억원 증자로 이의신청일 현재 자본금 00억원이다.

신청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시는 물론, 1991.3.20. 이후 자본 증자 시까지 증자대금도 신청인이 주금을 납입하였고, 2013.12.20. ○○○ 소유 주식 00,000주 및 ○○○ 소유 주식 00,000주, 총 00,000주를 명의신탁 해지로 신청인 앞으로 환원한 것이며, 이 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0천만원(0,000주) 중 신청인 소유 주식 0,000주, 배우자 ○○○ 소유 주식 000주, 동생 ○○○ 소유 주식 0,000주로서 전체 소유 주식은 0,000주(70%)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청인과 그 배우자인 ○○○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000,000주 중 각각 00,000주, 00,000주, 합계 00,000주(6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12.20. 신청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어 40% 증가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가분(40%)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건 법인은 1991.3.6. ○○○○○ ○○○ ○○○ 000-0 ○○○○ 0단지 00브럭 0롯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 및 ○○○○ ○○○○○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9.26. ○○○○ ○○○ ○○○○○ 00(○○○)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으로 되어 있음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신청인의 제적등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신청외 ○○○는 배우자, ○○○은 동생으로 나타난다.

<제적등본 내용>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2018년 기준)
신청인	○○○	000000-0******	00세
배우자	○○○	000000-0******	00세
동생	○○○	000000-0******	00세

(3) 이 건 법인이 작성하여 서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비고
	주식수	지분율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	기타	양도	기타			
합 계	000,000	100%		00,000		00,000	000,000	100%	
○○○	00,000	10%				00,000			
○○○	00,000	30%				00,000			
○○○	00,000	40%		00,000			00,000	80%	
○○○	00,000	20%					00,000	20%	

※ 과점주주(○○○, ○○○) 소유주식 비율 : 기초 60% → 기말 100%

(4)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작성일 : 1991년)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0명의 주주내역이 나타나 있고, 상호는 '주식회사 ○○○○○○○'로, 대표이사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주주명부 내용>

주주명	인수주식수	비율	일주의 금액	납입금액	비고
합 계	0,000주	100%		00,000,000원	
○○○	0,000주	40%	00,000원	00,000,000원	신청인
○○○	000주	10%	00,000원	0,000,000원	배우자
○○○	0,000주	20%	00,000원	00,000,000원	동생
○○○	0,000주	20%	00,000원	00,000,000원	
○○○	000주	3%	00,000원	0,000,000원	
○○○	000주	3%	00,000원	0,000,000원	
○○○	000주	2%	00,000원	0,000,000원	
○○○	000주	2%	00,000원	0,000,000원	

(5) 신청인이 제출한 창립총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는 ○○○, ○○○, ○○○ 3명이며, 감사는 ○○○로 되어있고, 주식 총수는 0,000주, 주주총수는 0명, 본점은 ○○○ ○○○ ○○○ ○○○ 000-00번지로 한다고 되어있다.

(6) 신청인이 제출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보면, ○○○○은행 ○○지점장이 1991.4.18.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앞으로 발급

한 것으로서, 신주식 발행총수 00,000주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000,000,000원을 1991.4.18. 납입이 완료되어 보관중임을 증명한다고 되어있다.

(7) 신청인은 신청외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내용>

> ○○○○ ○○○ ○○○○○ 00(○○○) 소재 주식회사 ○○○○(000000-0000000)의 1991.3.6.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 0인 이상 법인설립이 가능하여 본인은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지로는 ○○○이 출자하여 본인은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8)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 ○○ 소재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0,000,000,000원에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 증가분 40%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가산세 포함)를 2017.9.11.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 내역>

구 분	주소지	취득일자	취득가액	감가충당금	잔존가액
합 계			0,000,000,000		0,000,000,000
토지	○○○ ○○ ○○○ 000-0	2006.12.20.	00,000,000		00,000,000
토지	○○○ ○○ ○○○ 000-0외	2006.12.20.	0,000,000,000		0,000,000,000
토지	○○○ ○○ ○○○ 000-0외	2006.12.20.	0,000,000,000		0,000,000,000
토지	○○○ ○○ ○○○ 0000-00	2008.7.28.	00,000,000		00,000,000

(9)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법인 설립 시 신청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70%로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법인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유주식 합계는 00,000주이고 이 건 법인의 전체 주식 000,000주의 6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후 신청인이 ○○○, ○○○의 소유주식 00,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 소유주식은 000,000주가 됨으로서 그 비율이 증가(60%→100%)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청인은 1991.3.20. 이 건 법인의 증자 시 ○○○,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3.12.20.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제출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신주식 발행 총수 00,000주에 대한 납입금 전액 000,000,000원을 신청인이 납부한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주식 양도인 ○○○이 이 건 법인 설립 시 신청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0748, 2017.11.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시 '주주명부'에서 본인 및 배우자, 동생의 소유주식 비율이 70%로서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된 것으로 법원 또는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명부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건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사 신청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된 이후 신청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100%)하였으므로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관련규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6.

경 상 북 도 지 사

참고 자료(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정의) ① ~ 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⑥ ~ ⑮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 ③ (생략)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

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3. (생략)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생략)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 ④ (생략)